

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2. 2. 21.>

##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

\* 색상이 어두운 난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4일
상호(법인명)		사업자등록번호
대표자 성명		주민등록번호
신청인 소재지	주된 사무소	전화번호/팩스번호
	공장(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)	전화번호/팩스번호
등록 구분	승강기	[ ] 승강기 제조업 [ ] 승강기 수입업
	승강기부품	[ ] 승강기부품 제조업 [ ] 승강기부품 수입업
	자본금	

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 
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  
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

불임서류	<p>1.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2. 사업계획서      3.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     4.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  5.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(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     가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:          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(Apostille)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     ※ 아포스티유(Apostille)란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.      나. 「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」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:          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   </p>	<p>수수료      특별시 · 광역시 ·      특별자치시 · 도 ·      특별자치도의     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</p>
본인정보 공동이용 항목	<p>1. 사업자등록증 (행정정보 보유기관: 국세청)</p>	

###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행정정보 보유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 절차

